금융투자자(펀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자(펀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그리고 투자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이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중 주식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게되는 주주의 권리, 주식거래 시 계좌설정 방법과 주식매매 시 유의사항 등 주식거래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분쟁이 발생하였을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자(펀드) 1
1. 집합투자기구(펀드) 4
1.1. 집합투자기구 개념 4
1.1.1. 집합투자기구와 펀드 4
1.1.2.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7
1.1.3.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9
1.2.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12
1.2.1.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12
1.2.2.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16
1.3.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21
1.3.1.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21
2. 집합투자증권 30
2.1.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30
2.1.1.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30
2.1.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36
2.2.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40
2.2.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40
2.2.2. 환매가격 · 환매연기 43
3. 집합투자재산 47
3.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47
3.1.1.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등 47
3.1.2.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시 영업행위 제한 51
3.1.3.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공시 55
3.1.4.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특례 58
3.2.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60
3.2.1.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60
3.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63
3.3.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63
4. 금융분쟁 해결 방법 67
4.1.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67
4.1.1.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67
4.2.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68
4.2.1.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68
4.2.2.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72
4.2.3.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74
4.3. 소송 등을 통한 해결 78
4.3.1.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78
4.3.2. 증권관련집단소송 79

1. 집합투자기구(펀드)

1.1. 집합투자기구 개념

1.1.1. 집합투자기구와 펀드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

펀드와 집합투자기구

▪ “펀드(Fund)”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말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참조).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30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 ※ 펀드를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펀드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서 구매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로 그 밖의 경우에는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은 이 콘텐츠의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란?

▪ “집합투자”란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산업발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법적형태에 따른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법적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조합형 집합투자기구(「민법」의 조합, 「상법」의 조합)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제2장 참조).

법적형태	종류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민법」의 조합, 「상법」의 조합

개방형 및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환매권을 주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와 주지 않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권을 인정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

투자대상 및 투자성향에 따른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하는 대상이나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투자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초단기(MMF), 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32면).

구분		투자대상	특징
증권 펀드	주식형 펀드	주식에 60% 이상 투자	고위험·고수익 추구
	혼합형 펀드	주식(60% 이하)과 채권에 투자	채권투자의 안전성과 주식투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채권형 펀드	채권에 60% 이상 투자	안정적인 수익추구
초단기펀드(MMF)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펀드
파생상품 펀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	파생상품을 통한 구조화 된 수익추구
부동산 펀드		부동산에 투자	환금성에 제약이 따르지만 장기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추구
실물 펀드		선박, 석유, 금 등 실물자산에 투자	
특별자산 펀드		수익권 및 출자지분 등에 투자	
재간접 펀드		다른 펀드에 투자	다양한 성격과 특질을 가진 펀드에 분산투자

※ 용어해설

· **초단기펀드(Money Market Fund; MMF)**: 펀드 재산을 5년 만기 이내의 국채증권, 1년 만기 이내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CP), 어음, 6개월 만기 이내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펀드를 의미합니다. MMF는 현금등가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환율변동위험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 등 위험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펀드와는 달리 편입되는 자산의 만기, 펀드 보유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투자 가능한 채권,기업어음의 신용등급 제한, 외화자산 투자금지의 자산운용규제가 적용됩니다. MMF는 시중 금리의 변동에 큰 영향 없이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참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체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금융투자업자)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과 관련한 행위 규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행위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3편(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제5편(집합투자기구)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지배구조, 지분발행,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1.1.2.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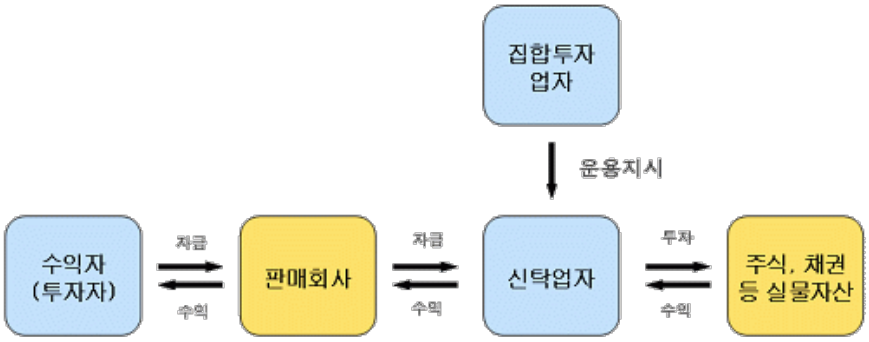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지자기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법적형태		내용
신탁형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투자회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회사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 책임회사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조합형	투자합자조합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익명조합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기본적 법률관계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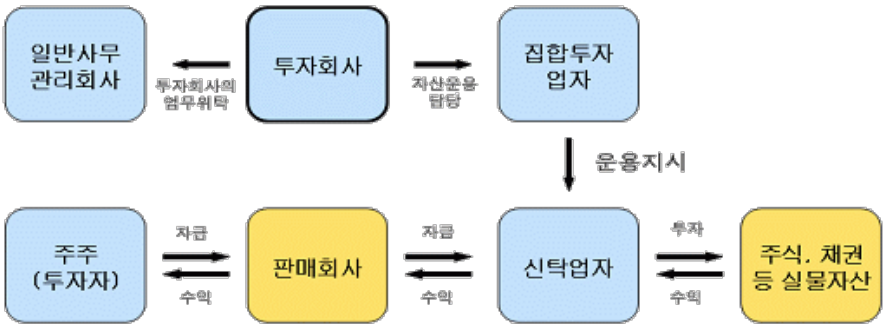
▪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수익자(투자자)의 3당사자로 구성됩니다.

▪ 투자자는 펀드(집합투자증권)를 판매회사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관계를 맺은 다음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지시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 참조).

당사자	각 당사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 투자·운용, 수익증권의 발행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감시 업무
수익자(투자자)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에 관해 투자지분에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가능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주주(투자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 등의 당사자로 구성됩니다.

▪ 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회사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7항).

▪ 또한 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담당하며, 일반사무도 투자회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6항),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는 업무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3항).

당사자	각 당사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자산운용을 담당
신탁업자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
주주(투자자)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의 지위 취득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와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음
투자회사	서류상의 회사형태로 남으며,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함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투자합자조합은 「상법」의 조합형태로서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유한책임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제1항), 조합원의 공동사업 형태로 영업을 합니다.

▪ 투자익명조합은 「상법」의 조합형태로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고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명과 익명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제1항), 영업자가 단독으로 영업을 합니다.

구분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당사자	2명 이상	영업자와 1명 이상의 익명조합원
영업형태	조합원의 공동사업 형태	영업자의 단독영업
출자목적물	금전, 재산 또는 노무	금전 또는 재산
채무에 대한 책임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 부담	영업자는 무한책임 익명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 부담

1.1.3.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운용대상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

종류	내용
1. 증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아래의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1.부터 3.까지 및 6.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6.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의2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

▪ 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설립하려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

▪ 집합투자업자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5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제2항).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 다만, 위의 1.부터 3.까지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1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금융투자업규정」 제7-21조제2항)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1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금융투자업규정」 제7-21조제3항)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2항에 따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종류형집합투자기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2항, 제196조제5항 및 제208조제1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불구하고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해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제1항).

▪ 종류형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종류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제2항).

전환형집합투자기구

▪ "전환형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업자등이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제1항).

▪ 전환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제1항).

-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을 것
- 집합투자규약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9조제19항제1호까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간의 전환이 금지되어 있을 것

모자형집합투자기구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업자등이 다른 집합투자기구(이하 "모(母)집합투자기구"라 함)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자(子)집합투자기구"라 함)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1항).

- 자(子)집합투자기구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
- 자(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
- 자(子)집합투자기구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같은 호'라'목은 제외함)는

자(子)집합투자기구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제2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를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s, ETF)"라고도 함]"란 기존의 개방형 인덱스펀드를 상장해 거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한국거래소, 증권용어사전 참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

▹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조).

1.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다음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제1항).

   가. 외국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

   나. 그 밖에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위 가.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장

2. 위 1.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3.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

※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87조제3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

1.2.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1.2.1.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투자신탁의 설립

▪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제1항).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함)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조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제4항).

투자회사의 설립

▪ 투자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투자유한회사는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제1항·제2항, 제207조 및 제213조).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 투자합자조합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제1항 및 제224조제1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

등록요건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

- 다음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 √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 √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함. 이하 같음)

-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을 것
-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구분	요건
투자신탁의 경우	①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해당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계열회사, 투자설명서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 포함)의 매수 계획으로서 매수 규모·기간 등에 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②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로서 설정·설립 이후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로 한정] 중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3제1항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5 이하일 것
투자회사의 경우	①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③ 위 투자신탁의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 ※ 다만,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위 ①의 요건으로 한정함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①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위 투자신탁의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 ※ 다만,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렇지 않음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4항).

▪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6항).

-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등록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7항).

등록전 광고의 금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위에 따라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 본문).

▪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그 집합투자기구의 개괄적인 내용을 광고하여도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3항 후단).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아래의 경우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6조의2제1항).

▹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교차판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로서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함)를 체결한 해당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위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4항, 제2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2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을 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위 2., 3.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라 함)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 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2항·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일 것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출 것
-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 등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3항의 요건을 갖출 것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4항 및 제182조제4항).

▪ 금융위원회는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4항 및 제182조제6항).

-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등록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4항 및 제182조제7항).

> ※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4항 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5항).

1.2.2.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투자신탁의 해지와 합병

투자신탁의 해지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함. 이하 같음)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2항).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6. 투자신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위 3.의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신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3항).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5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

-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1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투자신탁의 합병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1항).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2항 본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6조제1항).

-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 합병을 할 날
-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분배할 경우에는 그 한도액
-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 합병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좌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조의2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 단서).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본점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에 갖춰 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4항).

-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면
- 합병계획서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5항).

▪ 투자신탁의 합병은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투자신탁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6항).

▪ 합병 후 존속하는 투자신탁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투자신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7항).

투자회사의 해산과 합병

투자회사의 해산

▪ 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제1항).

-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 투자회사의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 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 주주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조의2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조제1항).

구분	내용
첨부서류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 정관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사항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청산인 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2명 이상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회사는 해산한 경우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청산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산감독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제3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조제2항).

구분	내용
첨부서류	·감독이사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감독인이 된 경우: 정관 ·주주총회에서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금융위원회가 청산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및 투자회사의 파산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이하 “청산인회”라 함)를 둡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제4항).

▪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선임

▹ 투자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또는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함)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제5항).

▹ 투자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제6항).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경우

√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 「상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 투자회사가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제7항).

투자회사의 청산 절차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투자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제2항).

▪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제3항).

▪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제5항).

▪ 청산인은 청산인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청산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갖춰 놓아야 하며, 이를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제7항).

투자회사의 합병

▪ 투자회사는 그 투자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4조제1항).

▪ 투자회사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4조제2항).

▪ 합병 시에는 합병계획서 등 공시, 합병 시 금융위에 대한 보고, 거래소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4조제3항).

투자합자조합의 해산과 청산

투자합자조합의 해산사유

▪ 투자합자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제1항).

- 조합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 조합원총회의 결의
- 투자합자조합 등록의 취소
-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투자합자조합의 해산과 청산 절차

▪ 투자합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제2항).

▪ 금융위원회는 투자합자조합이 위에 따른 청산인이 없거나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제3항).

▪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제4항).

▪ 청산인은 투자합자조합의 남은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때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합자조합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제5항).

※ 그 외의 청산사무에 대해서는 투자회사의 청산감독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투자회사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의 규정이 준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제6항).

1.3.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1.3.1.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란?

▪ "일반사무관리회사"란 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영위하거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및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계산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제1항).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및 등록요건

▪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1항·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명의개서대행회사

√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상근 임직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전산설비 등 다음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 임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다음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이나 파견을 금지할 것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8항).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및 공고

▪ 금융위원회는 위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4항).

▪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7항).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6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8조).

▹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

√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및 제54조).

▪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9호).

자료의 기록·유지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영업에 관한 자료, 재무에 관한 자료, 업무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료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및 제60조제1항).

▹ 이러한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11호).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위에 따라 기록·유지해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및 제60조제2항).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손해배상 의무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및 제64조제1항 본문).

▪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신의성실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이해상충 방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교류차단 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함)로서 그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및 제64조제1항 단서).

임원의 연대배상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5조 및 제64조제2항).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란?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1항).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및 등록요건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1항·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조).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가 아닐 것

-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상근 임직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증권·집합투자기구 등의 평가·분석업무나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함)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집합투자기구평가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전산설비 등 다음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 √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 임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다음의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를 갖출 것
  - √ 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
  - √ 수익률과 위험지표의 계산에 관한 사항
  - √ 집합투자기구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 √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 다음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8항).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및 공고

▪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신청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4항).

▪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7항).

영업행위준칙의 제정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9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조제1항).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9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조제2항).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1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3조).

-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 √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 √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및 제54조).

▪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9호).

자료의 기록·유지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영업에 관한 자료, 재무에 관한 자료, 업무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료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및 제60조제1항).

- 이러한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11호).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위에 따라 기록·유지해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및 제60조제2항).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손해배상 의무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및 제64조제1항 본문).

▪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신의성실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이해상충 방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교류차단 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함)로서 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및 제64조제1항 단서).

임원의 연대배상 책임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0조 및 제64조제2항).

채권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란?

▪ "채권평가회사"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1항).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및 등록요건

▪ 채권평가회사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1항·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5조).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3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또는 다음의 금융기관의 출자액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일 것
  - √ 은행
  -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 보험회사
  - √ 금융투자업자
  - √ 종합금융회사
- 상근 임직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을 포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상근하는 10명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금융투자상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이나 채권평가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전산설비 등 다음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채권평가회사의 업무를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및 사무장비

√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 임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다음의 사항에 대한 채권 등의 가격평가체계를 갖출 것

√ 평가대상 채권 등에 관한 사항

√ 채권 등의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 수익률 계산방법

√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 다음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 간에 직원의 겸직과 파견을 금지할 것

√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를 하는 사무실이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 채권평가회사의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관리·열람될 것

▪ 위에 따라 등록을 한 채권평가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8항).

금융위원회의 등록결정 및 공고

▪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4항).

▪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채권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7항).

업무준칙의 제정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4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7조제1항).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또는 협회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채권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7조제4항).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6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8조).

- 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
  - √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 √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율규제에 준하는 내부기준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채권평가회사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및 제54조).

▪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9호).

자료의 기록·유지

▪ 채권평가회사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영업에 관한 자료, 재무에 관한 자료, 업무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에 관한 자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료의 종류별로 일정 기간 동안 기록·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및 제60조제1항).

- 이러한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유지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11호).

▪ 채권평가회사는 위에 따라 기록·유지해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및 제60조제2항).

채권평가회사의 손해배상 의무

▪ 채권평가회사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및 제64조제1항 본문).

▪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채권평가회사가 신의성실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이해상충 방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교류차단 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의무 규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함)로서 그 채권평가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및 제64조제1항 단서).

임원의 연대배상 책임

▪ 채권평가회사가 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평가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5조 및 제64조제2항).

2. 집합투자증권

2.1.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2.1.1.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집합투자증권의 개념

“집합투자증권”이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함)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 **※ 펀드와 집합투자증권**
>
> √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 자체를 펀드라고 하며, 펀드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라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집합투자증권이라는 뜻으로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뮤츄얼펀드) 주식 등과 같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그 결과를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
>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참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증권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1항).

▪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2항).

▪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4항).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3항).

수익증권 기재사항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함)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5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조).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 수익증권의 발행일

수익자명부 작성의 전자등록기관 위탁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함)에 위탁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6항).

▪ 전자등록기관은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적은 수익자명부를 작성·갖춰 놓아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7항).

-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 전자등록기관은 위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8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조).

투자회사의 주식 발행

투자회사의 주식

▪ 투자회사의 주식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제1항).

▪ 투자회사는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제2항).

신주발행

▪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제3항).

▪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회사(이하 ´개방형투자회사´라 함)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제4항 전단).

1. 신주의 발행기간
2. 신주의 발행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3. 신주의 발행기간 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 이 경우 개방형투자회사는 위의 3.의 방법에 따라 확정된 매일의 발행가액을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제4항 후단).

▪ 투자회사는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에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균등하게 정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제5항 전단).

▪ 주식인수인은 투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6조제7항).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증권신고서(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 일괄신고서)의 제출

▪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그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

▪ 일괄신고서

▹ 집합투자증권을 공모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위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개방형집합투자증권"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적은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함)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항 전단).

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가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 위 일괄신고서를 통하여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함)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항 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함)을 발행예정기간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2항).

▹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발행예정기간 중 3회 이상 그 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3항).

※ 처벌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5항을 제외함)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2호·제1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 위의 모집·매출에 관한 신고서와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함)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에 따라 아래의 기간이 지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1. 채무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인 경우에는 5일

   가. 담보부사채

   나. 보증사채권

   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

   라.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채무증권

2.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투자회사는 제외함)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함)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3. 증권시장에 상장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10일, 주주 등 출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인 경우에는 7일

4. 위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외의 경우에는 15일

▹ 위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

▹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4항).

▪ 거래의 제한

▹ 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

▹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 일괄신고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2항).

▪ 정정신고서

▹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정정신고서”라 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1항).

√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 위의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그 증권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2항).

▹ 증권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함)를 제출한 자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3항 후단).

※ 처벌규정

√ 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4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위의 그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0조제3항).

√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중 개방형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발행예정금액 및 발행예정기간은 이를 정정해서는 안됩니다.

√ 다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감액되는 발행예정액수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5항).

투자설명서

▪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함) 및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함)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함)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다음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

√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함)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 본문).

> ※ **처벌규정**
>
> √ 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
> √ 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2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5항).

1.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발행인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인은 위의 투자설명서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제6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1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려는 자(전문투자자,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자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맞는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함)를 미리 발급하지 않으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후단).

√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함)가 동의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에 대한 책임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제1항·2항).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함)

▹ 「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함)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① 인수인 또는 ②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그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할 것을 의뢰받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을 말함)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1항 단서).

2.1.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계약 체결

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5항 본문).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다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5항 단서).

> 펀드 가입절차가 복잡해진 이유는?
>
> Q.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펀드에 가입하는 절차가 복잡해졌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회사가 특정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이하 투자권유)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자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함).
>
>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원본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이를 설명의무라 함). 이에 다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정보 확인, 설명절차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절차가 종전에 비해 다소 복잡해진 측면이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건전한 투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
>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투자권유

판매자의 설명의무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 펀드 판매 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 ·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환매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중도 환매가격에 관하여 오해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고객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객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고객파악 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투자상품에 대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투자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해그 일반투자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재산상황 및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부당권유 금지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잘못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계속적인 투자권유 거부의사에 반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하거나 과도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행위, 판매대가를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제한

판매제한 사유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함)로부터 그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본문 및 제92조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한 경우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위의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단서 및 제92조제2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한도

▪ "판매수수료"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아래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4항).

구분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판매수수료나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5항).

- 판매수수료: 판매 또는 환매시 한꺼번에 투자자로부터 받거나 투자기간 동안 나누어 투자자로부터 받는 방법
- 판매보수: 매일의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방법

운용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금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곳

Q.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등 제반비용과 펀드매니저 및 자산운용사에 대산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등 제반비용과 펀드메니저 및 펀드수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통계(http://freesis.kofia.or.kr/)에서 보수 및 비용비교 확인 메뉴를 통해 펀드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홈페이지>



또한 자산운용회사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



2.2.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2.2.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

환매청구의 자유

▪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1항).

환매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 투자자가 위에 따른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환매청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8항).

1.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은 제외함)가 해산한 경우
2.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투자회사의 주주 또는 그 수익자·주주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해 「상법」 제354조제1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절차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및 환매요구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2항 본문).

▪ 위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3항).

신탁업자 등에 대한 환매청구 및 환매요구

▪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함)로 인해 환매청구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해 환매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2항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산등으로 인해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력,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3항).

환매대금의 지급

▪ 위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또는 투자회사 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4항).

▪ 위에 따라 환매대금은 15일 내에 지급해야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조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32조제1항·제2항).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의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함)에 투자하는 경우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또는 투자회사 등은 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5항).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의 취득제한 및 예외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본문).

▪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해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6항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32조제3항).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함)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가격으로 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7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정보를 알고 싶으면?

Q.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펀드의 환매 등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펀드의 환매정보, 즉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환매제한기간 중 투자자부담)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사이트의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환매가격 · 환매연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 및 환매수수료

환매가격 산정방법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1항 본문).

▪ 다만,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환매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제1항).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다음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제6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

√ 예금 인출

환매수수료 산정 및 부담

▪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2항)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이 경우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조제2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다음의 경우로 인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1항 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청구 금액이 환매청구일 현재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위에 따른 환매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결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결의를 말함)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1항 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제1항).

-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다만, 위 4.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제외함)
-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2항).

환매결의 또는 환매연기 시 투자자에 대한 통지사항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3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조제2항·제3항).

▸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 환매가격

√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집합투자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8조제1항 본문·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은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33조의2에 따름

일부 환매연기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위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따를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5항).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8조, 제238조제7항, 제24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4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6항).

환매연기 시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에 대한 통지

▪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함. 이하 같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한 경우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 그 밖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3. 집합투자재산

3.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3.1.1.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등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선관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충실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등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 원칙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본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 예외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단서).

  - 위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 전단).

  - 위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 후단).

-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말함)로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함)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5항 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항).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5항 후단).

자산운용의 제한

자산운용시 금지 행위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함)할 때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81조제1항).

운용 대상	자산운용의 제한
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 일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부동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함)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함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함

집합투자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함)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함)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그 밖의 운용대상	√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를 하는 행위(「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제1항) √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제1항) √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100분의 2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제2항)

예외(허용사유)

▪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단서).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 소각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금전차입 및 대여 제한

금전차입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금전대여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4항·제5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한도 내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방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6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보증 및 담보제공의 금지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해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5항).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다음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본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함.
  1.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2.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및 제97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예외

▪ 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단서).

-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집합투자업자 및 그 계열사 발행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의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함)은 제외함]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수익증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함)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항).

3.1.2.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시 영업행위 제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불건전 영업행위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2항·제3항·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제2항).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함. 이하 같음)에 속하는 인수인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의 비율 이상 판매한 인수인(이하 “관계인수인”이라 함)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함)를 형성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불공정 영업행위의 예외

▪ 위 불건전 영업행위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증권시장의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단서).

불공정 영업행위의 처벌

▪ 위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1.부터 7.까지의 행위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8호).

▪ 위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8.의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29호).

성과보수의 제한

성과보수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함)를 받아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본문).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단서).

- 집합투자기구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보수의 산정방식, 투자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그 밖에 다음의 사항을 해당 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제6항).

-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 기준지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제2호만 해당함)
-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과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성과보수 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

▪ 위 성과보수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29호).

의결권 제한 등

투자자 이익보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

▪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함)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항).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위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 √ 그 집합투자업자,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와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함)

▹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와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함)의 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주요의결사항”이라 함)에 대하여 위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3항).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6항).

▪ 위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1호).

의결권 행사 및 교차행사의 금지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위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4항 및 제5항).

▪ 이러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1호).

금융위원회의 주식처분 명령

▪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위 의결권 제한, 의결권 행사 금지, 의결권 교차 행사 금지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6항).

▪ 이러한 주식처분 명령에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제15호).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함)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을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7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32호).

의결권 행사의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8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1항).

구분	공시내용
1.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

▪ 이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33호).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의 자료를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제9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4항).

-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3.1.3.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공시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자산운용보고서의 발급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본문).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제1항).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함)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발급하는데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5항).

펀드보유 시 확인해야 할 정보와 유의사항
Q.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확인해야 할 정보나 유의사항은 없나요? A. 펀드가입 이후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 보관·관리회사는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 현황, 투자규모 등을 유지·관리하며,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잔고를 통보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업무를 합니다. 1. 수동적 서비스: 투자자 전화 문의 등에 대한 응대, 투자자 보고서 발송(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등 2. 적극적 서비스: 펀드 잔고 통보, 자산관리 보고서 발송, 우수(인기)펀드 추천, 투자자 세미나 개최 등 이 중 자산운용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송부하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운용성과 개요 및 운용기간 중 손익, 펀드자산내역,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등의 중요한 투자정보가 담겨 있으니 분기별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신탁회사가 작성하여 판매회사가 보내주는 분기별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펀드의 적정 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펀드매니저 변동사항, 약관변경 사항, 수익자 총회 의결내용, 운용상 위반사항·시정사항 등 펀드의 적정한 운용여부를 분기별로 체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참조>

자산운용보고서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를 위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은 자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작성하여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제14호).

수시공시

수시공시 대상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7조).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수시공시 방법

▪ 위의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

-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중요사항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Q.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펀드의 중요사항에 관한 수시공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수시공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사이트의 펀드공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사·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나 전자우편, 혹은 자산운용사·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본인이 가입한 펀드의 간편코드번호(5자리, 협회가 부여)를 알고 있으면 검색이 간편함].

영업보고서·결산서류의 제출 및 장부·서류의 열람 등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의 제출

▪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함. 이하 같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위에 따라 제출받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

▪ 협회는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2항에서 정하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각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명세가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4항).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해지 또는 해산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3.1.4.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특례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파생상품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함. 이하 같음)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 각 호의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후단).

▪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

부동산의 운용 특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 취득 시 금전의 차입 및 대여

▪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전을 차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1항).

▪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2항·제3항).

-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 집합투자업자가 위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한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4항).

실사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갖춰 놓아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2조제1항).

- 부동산의 거래비용
-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그 밖에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담보권 설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과 실사자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일정·추진방법,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6항).

-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조달·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미고시)

▪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수익자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5항).

3.2.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3.2.1.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등

선관주의의무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4조).

신탁업자의 제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제1항).

-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유한책임회사로 한정함)
-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기록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제2항).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제5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조제4항).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의 예치(다만,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3. 단기대출(다만, 집합투자재산 중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함)
5.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함)
6.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거래(이 경우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 한정)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호의3에서 정하는 거래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제6항)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제7항)

증권의 예탁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다음의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조제1항·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0조, 제4-15조제1항).

- 어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함)
- 증권과 유사하고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에 적합한 것으로서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것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감시 등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 등

▪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함)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1항).

▪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2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다음에 따라 행하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제3항)

-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시내용이 법령·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였는지를 결정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할 것
-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시정요구 불이행 시의 그 내용의 보고 및 공시

▪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은 제외함)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시정 요구를 3영업일(요구를 한 시점이 1영업일이며, 2영업일은 다음날을, 3영업일은 그 다음날을 뜻함)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3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제2항).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중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내용

신탁업자의 확인의무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5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제4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발급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8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조제2항).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제5항의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미고시)

▪ 신탁업자는 위에 따른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2개월의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발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8조제2항)

3.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3.3.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제1항·제2항·제3항).

구분	내용
시가에 따른 평가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
공정가액에 따른 평가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제2항에 따른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2항).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함)을 마련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3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1조제3항).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함)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4항).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5항).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위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위의 기준가격의 공시의무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함)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함)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제1항 전단).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7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제5항).

-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기준가격 거짓 산정 시 위탁명령

▪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기준가격 산정방법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8항).

집합투자재산의 결산서류

결산서류의 작성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함)를 작성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해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그 결산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2항).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서류를 본점(투자회사등의 경우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을 포함함)에 갖춰 놓아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3항).

- 결산서류
- 회계감사보고서
-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투자회사의 경우만 해당함)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등 및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4항).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5항).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등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3항 본문).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위의 1.과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3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조).

- 집합투자기구(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함. 이하에서 같음)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회계감사인은 위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이용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제1항 전단).

▪ 위에 따라 회계감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제1항 후단).

▪ 회계감사인이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제2항 본문).

▪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제2항 단서).

4. 금융분쟁 해결 방법

4.1.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4.1.1.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당사자간의 분쟁해결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해결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금융투자협회, 행복금융투자길라잡이, 20면).

▪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731조).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해결 시 주의사항

Q. 「민법」의 화해계약을 통해 금융분쟁을 해결할 경우 주의할 점은 없나요?
A. 「민법」의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해결은 합의과정에서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합의내용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합의한 이후에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다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은 가장 손쉽고 합리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해계약을 통해 분쟁을 종결할 때에는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시대의 현명한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 제82면 참고>

투자계약 시 손실보전행위의 금지

손실보전 등의 금지

▪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제1항).

손실보전 행위의 효력(무효)

▪ 위와 같은 손실보전 금지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을 약속한 경우 판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30718 판결).

4.2.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4.2.1.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금융분쟁 조정 담당기관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

<금융상담 및 민원처리제도>

√ 금융감독원은 서울 본원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지원 및 춘천·전주·제주 출장소에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질문, 요청,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상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상담업무 처리를 위해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운영하는 한편, FAQ(자주하는 질문), 분쟁조정사례 등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Q&A(질의응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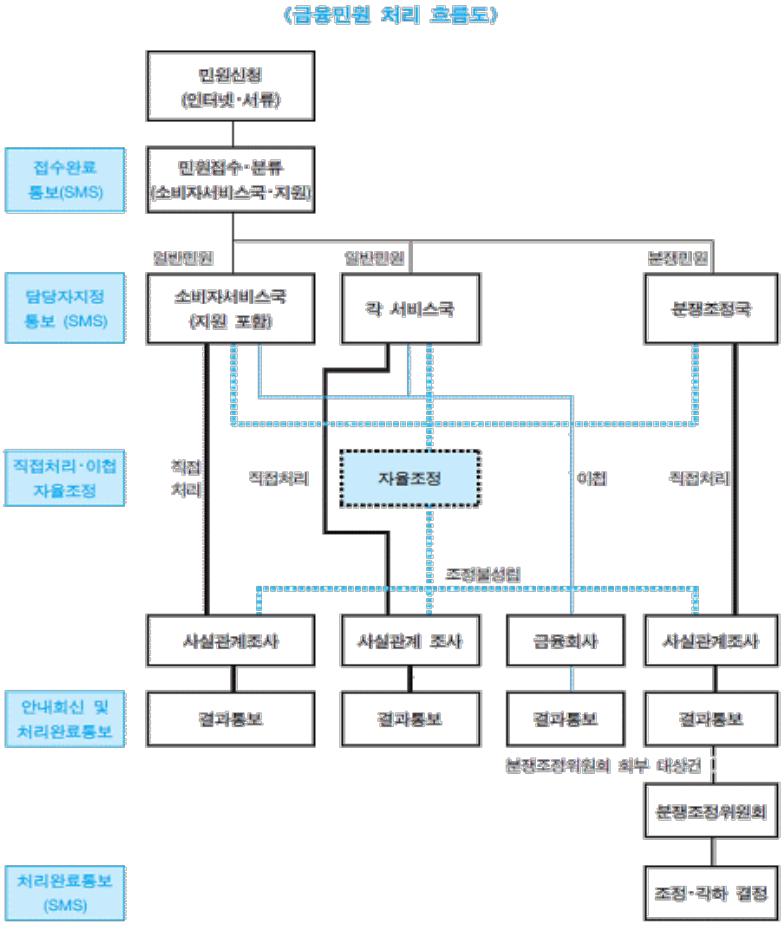
<금융분쟁처리제도>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68면 참조>

분쟁조정 처리절차

금융민원 처리 흐름도



<출처: 금융감독원, 2010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백서>

민원제기

▪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 민원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제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상대 금융회사명
-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청요지

민원접수 후 통보

▪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완료 후 핸드폰 문자통보를 해주며, 담당자가 지정되면 다시 문자통보를 해 줍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

▪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해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합의권고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본문).
-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단서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신청 내용의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 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3항).

심의 후 조정결정통지 및 수락권고

-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안을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
-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
- 수락을 권고할 때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조정안의 수락

-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7항).

소 제기 시의 통지

- 당사자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또는 회부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소송과의 관계

▪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4.2.2.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담당기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민원제기

▪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 민원제기는 전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민원제기

√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단일 대표전화 1372로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을 높이고 모범상담 답변과 상담정보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담효율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출처: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합의권고

▪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제1항).

▪ 한국소비자원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다음의 사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의료 관련 사건
- 보험 관련 사건
-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분쟁조정의 효력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전단).

- 당사자가 15일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후단).

-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있거나 분쟁조정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가 다시 신청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다음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8조).

4.2.3.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

한국거래소의 자율조정 기능

-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10호).

- 거래소 내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5조제2항).

- 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5조제3항).

분쟁조정절차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 절차>



<출처: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 참조>

▪ 분쟁조정신청

▹ 위탁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함) 또는 회원(거래참가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은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규정」 제4조제1항).

▹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이나 구술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규정」 제4조제2항).

▪ 사실조사

▹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에 관련된 사실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방문, 출석요청, 현장답사 또는 사실·자료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분쟁조정규정」 제8조제1항).

▪ 종결처리 및 합의권고

▹ 위원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사건 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규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 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 위원장은 합의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분쟁조정규정」 제12조제1항).

※ 위원회는 사건의 심의를 위해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규정」 제13조제1항).

▪ 조정의 결정 및 통지

▹ 위원회는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분쟁조정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분쟁조정의 효력

▪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민법 제732조).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 방법
Q.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제도(http://drc.krx.co.kr)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는 60일 이내에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조정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며 조정비용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금융투자협회의 자율조정 기능

▪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2호).

▪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8조제2항).

▪ 협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8조제3항).

분쟁조정절차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절차>



<출처: 금융투자협회-투자자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 참조>

▪ 분쟁조정신청접수/통지

▹ 분쟁조정절차는 신청인이 금융투자협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원하는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신청/조회란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금융투자협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분쟁조정신청서, 관련증거서류 또는 자료, 신청인 신분증이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신청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됩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

▪ 합의권고

▹ 조정신청/조회란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신청 후 신분증 사본, 관련증거서류 또는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금융투자협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 회부 전 처리

▹ 분쟁조정신청 취하서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법원에의 제소, 신청내용의 허위사실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

▪ 위원회 회부

▹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협회는 조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며 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 또는 각하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제척되며 신청인은 위원명단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9조).

▪ 조정의 성립

▹ 당사자가 조정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명날인한 수락서를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합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 회원인 당사자는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1조).

▪ 재조정신청

▹ 분쟁조정신청의 당사자는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분쟁조정의 효력

▪ 당사자가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민법」 제732조)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방법
Q.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의 분쟁조정센터 조정신청/조회란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신청 후 신분증 사본, 관련증거서류 또는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금융투자협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4.3. 소송 등을 통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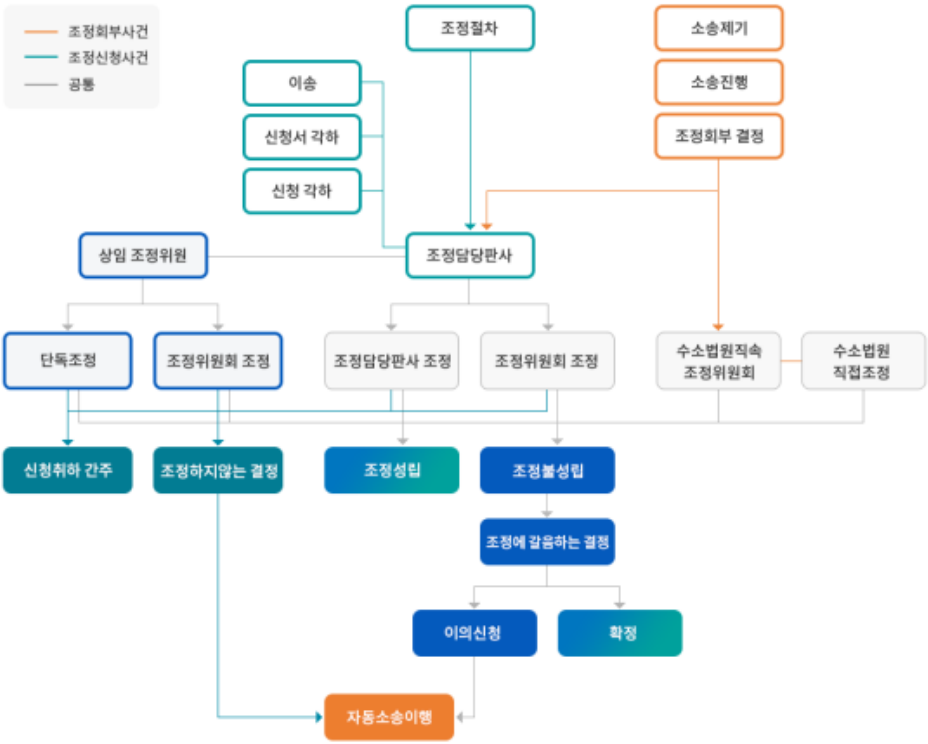
4.3.1.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민사소송의 개요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



<출처: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조정절차 참조>

화해권고결정

▪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및 「민사조정법」 제6조).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및 「민사조정법」 제32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2. 증권관련집단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요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제1호).

> •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그 종류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일반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授權)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금융감독원,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안내 참조).

> • "제외신고"란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한 구성원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旣判力)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제5호).

소송제기 사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범위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또한 위의 손해배상청구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2항).

> • "주권상장법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
>
>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 2.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소송제기 및 허가 요건

변호사 선임의 강제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제1항).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제2항).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1항).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2항).

▪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3항).

소송허가 요건

▪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적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합니다(금융감독원,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안내 참조).

▪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제1항).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 다만,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위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제2항).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訴狀)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제1항).

▪ 법원은 위에 따라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함)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지정거래소는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제4항).

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 법원은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제1항).

1.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 위의 4.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증권관련집당소송과 관련 증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

▸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 법원은 위의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자와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맞는 자를 결정(決定)으로 대표당사자로 선임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제4항).

▪ 대표당사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0조제5항).

소송허가 절차

▪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疎明)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3조제1항).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3조제2항).

▪ 법원은 위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3조제3항).

소송허가의 결정 등

소송허가 결정

▪ 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의 소송제기 사유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제12조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및 소송허가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제1항).

▪ 법원은 위의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해야 하며, 지정거래소에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해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 위의 1.부터 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송 불허가 결정

▪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7조제1항).

▪ 위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7조제2항).

판결의 효력

확정 판결의 효력

▪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 전원에게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8조제1항제8호 참조).

금전 등의 분배

▪ 소송의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0조제1항).

▪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분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1조제1항).

▪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합니다(「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1조제2항).

<증권관련집단소송 사례(대법원 2015. 4. 9. 자 2013마1052,1053 결정)>

한화증권은 2008. 4. 22.포스코 보통주와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 제10호'(이하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3개월 단위의 조기 및 만기 상환기준일에 두 기초자산 모두의 종가가 상환기준가격(포스코 보통주는 494,000원, 에스케이 보통주는 159,5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3개월 단위로 기준가격의 90%, 85%, 80%, 7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결정되면 액면금에 연 22%의 수익금을 더하여 상환하고, 두 종목 중 하나라도 만기 상환기준일의 종가가 만기 상환기준가격 미만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금손실을 보게 설계된 상품이다.

한화증권은 2008. 4. 25.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이 성취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상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건 주가연계증권과 동일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내용의 스와프(Swap)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표당사자와 구성원들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발행일 무렵에 한화증권으로부터 위 증권을 매입하였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만기 상환기준일인 2009. 4. 22. SK 보통주는 만기 상환기준가격(기준가격의 75%인 119,625원) 이상인 120,000원에서 124,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는데, 피고는 장 종료 무렵에 보유하고 있던 SK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하였고, 그 결과 SK 보통주의 종가는 119,000원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투자자들은 만기일인 2009. 4. 27. 이후 한화증권으로부터 만기상환금으로 투자금의 약 7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대표당사자와 구성원들은 피고가 만기 상환기준일에 SK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한 것이 기초자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를 구하는 사건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대량으로 발행·유통되는 증권과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자행되면 집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반면 개별 피해자의 손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함과 아울러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투자자에게 상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 성취가 무산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만기에 투자금 중 일부만 상환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항고인들의 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